

# 부 칙 (공간사용약관)

## 제 1 장 총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아주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의 학생자치공간 (이하 "공간"이라 한다)의 배정 및 용도변경 등 공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간 기본계획 수립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정의)

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 
"공간"이라 함은, 본 대학교 내에서 인적, 물적 자원이 점유하여 활동하는 장소를 말하며 이는 본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교지의 건물 내·외부의 지정된 장소를 포함한다.

**제3조(공간사용의 기본원칙)** 이 규칙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공간의 비품 및 시설물은 본 대학교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이용하는 학생 모두가 쾌적한 학생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② 공간은 모든 아주대학교 학생들의 자유로운 가치 활동을 권장하고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각 공간 사용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간 사용기구가 책임을 진다.
- ④ 각 공간에 대여된 비품은 본 대학교의 재산이므로 파손하지 않고 집기 반출 시에는 학생처에 사전승인을 받는다.
- ⑤ 본 대학교 소유의 비품 파손이나 분실 시에는 해당 공간 사용기구가 배상책임을 갖는다.
- ⑥ 정기적인 청소를 통해 청결상태를 유지하며 국가 및 학교가 시행하는 에너지 절감운동에 동참하고 절전 및 절수를 생활화 한다.
- ⑦ 공간사용기간은 해당 연도 1학기 개강부터 다음 연도 1학기 개강 전(1년)으로 규정한다.

### 제4조(방화관리)

- ① 화재예방을 위하여 인화성 물질의 취급이 금지된 구역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.
- ② 화재 및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소화전, 소화기, 비상구의 위치 등을 사전에 필히 숙지한다.
- ③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 숙지 조치는 공간 사용기구에서 담당한다.
- ④ 각 공간 호실별로 방화관리자(정,부)를 선임하며, 선임된 방화관리자 명단을 학생처에 제출한다.
- ⑤ 방화관리자는 각 호실의 방화관리 책임을 진다.

## 제 2 장 학생공간관리위원회

### 제5조(학생공간관리위원회)

- ① 공간의 조정, 분쟁 등 공간사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공간관리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의 구성은 회칙에 따른다.

### 제6조(위원회의 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회칙 개정 및 발의
2. 공간사용약관에 따른 공간 활용 현황 파악
3. 공간·확장·퇴실·입실 및 재배치 규칙과 기준에 따라 미사용 공간의 입방 및 재배치와 퇴실 등 부분적인 공간에 대한 사항
4. 학교 당국과 공간에 대한 협의 사항

## 제 3 장 징계 사항

### 제7조(징계)

- ① 공간 및 건물 내에서 음주행위를 한 단체 (단, 주류 반입 등 음주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소지할 경우 음주로 판단함)
- ② 공간 및 건물 내에서 흡연행위를 한 단체 (단, 재떨이 및 담배꽂초가 해당 공간 내에 있을 경우 흡연으로 판단함)
- ③ 공간 내에서 도박(화투,카드,온라인 도박 등)행위를 한 단체
- ④ 전열기구(전기장판 포함) 및 취사기구(버너, 부탄가스 포함)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단체
- ⑤ 청소상태가 너무 불량하여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며 악취가 발생한 단체
- ⑥ 고성방가 및 풍기문란 행위가 발생한 단체
- ⑦ 공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한 단체
- ⑧ 실 별 열쇠 또는 도어락을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하는 단체
- ⑨ 공간 배치 제출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적발된 단체
- ⑩ 이 밖에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지속한 단체

### 제8조(징계처리)

- ① 징계는 주의와 경고로 나뉘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.
- ② 경고와 주의 1회의 유예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이다.(공간 재배치 시, 경고가 1회 누적되어 있는 단체는 재배치에 영향을 받는다.)
- ③ 징계를 받은 단체는 2회 경고 누적 시 공간 사용에 있어 즉시 그 자격이 박탈된다.

### 제9조(퇴실)

- ① 경고가 2회일 경우

- ② 화재의 책임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
- ③ 학교 비품 파손 및 다른 공간에 침입하여 도난행위를 한 자의 소속단체
- ④ 불미스러운 사건(성폭행, 폭행 등)이 발생한 공간의 소속단체
- ⑤ 학교 관계자 및 경비용역 직원이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**음주, 도박, 흡연 행위 등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** 지속한 자의 소속단체
- ⑥ 외부인, 외부단체에게 불법적으로 공간을 대여한 단체
- ⑦ 위 항들처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 경우 학교와 **징계위원회**가 협의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다.
- ⑧ 징계로 인해 퇴실된 단체는 다음 연도 공간재배치에서 권리를 상실하는 유예기간(**최대 2년**)을 가지며, 유예기간이 끝난 뒤 정상화된다.
- ⑨ 퇴실된 단체에 대한 공간배치 권리는 해당 단과대학, 동아리연합회가 지닌다. (단, 해당 단체가 총학생회, 단과대학, 또는 동아리연합회가 될 경우 중앙공간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공간을 재배치한다.)
- ⑩ 퇴실 확정이 된 단체는 2주 안에 퇴실을 해야 하며, 해당 공간은 다른 단체가 사용할 수 있다.

#### 제10조(시행일)

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